



# IFRS Brief

## IFRS Newsletter

###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 · 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토론서(Discussion Paper, “DP”) 및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무서]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

IASB는 2017년 9월에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을 발표하였다. 이 실무서는 IFRS에 따라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에 대한 강제적이지 않은 지침을 보고 기업에게 제공한다.

이 실무서는 다음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 중요성의 일반적인 특징
- ✓ 중요성 판단의 4단계: 중요성 과정
- ✓ 특정 상황(과거 기간의 정보, 오류, 약정 및 중간재무보고)에서 어떻게 중요성을 판단 하는지에 대한 지침

#### 중요성의 일반적인 특징

중요성은 IFRS의 모든 기준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한지 즉,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제표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하다. 경영진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 기업의 특수한 사정과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중요성 판단의 4단계: 중요성 과정

중요성 과정은 기업이 정보의 표시 및 공시의 목적뿐만 아니라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4단계로 설명한다.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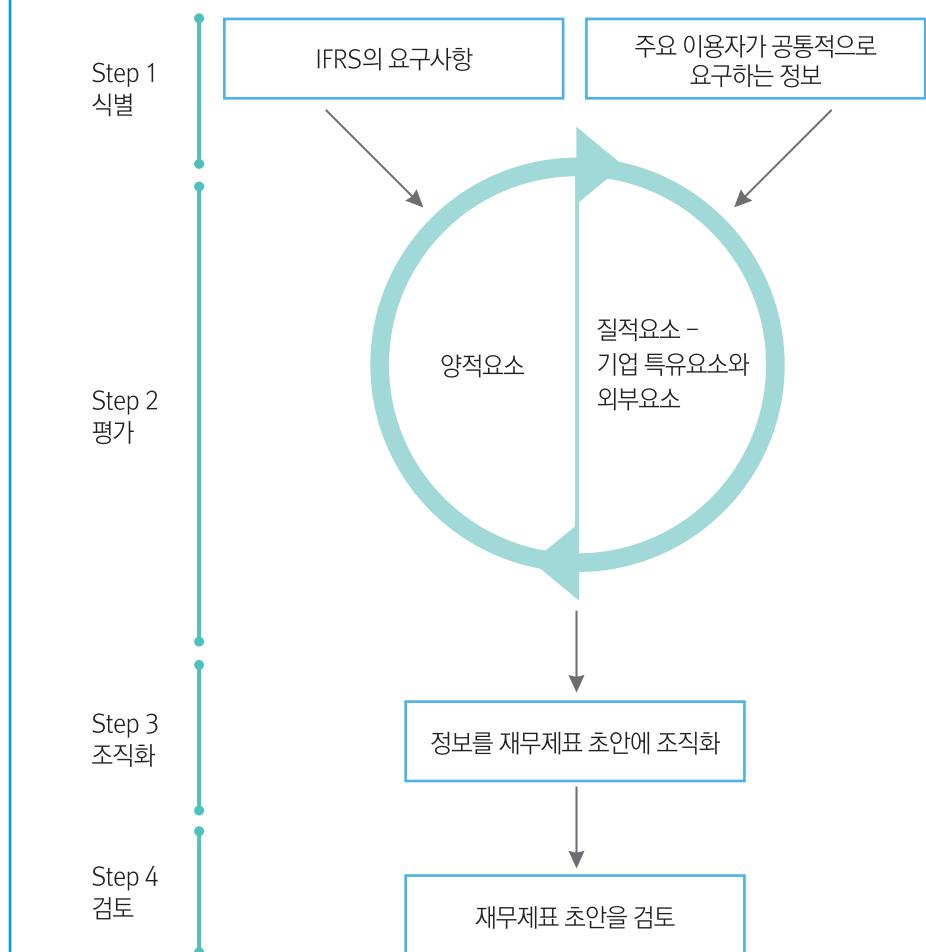
#### IFRS 뉴스레터 2017년 11 · 12월호

|                                       |    |
|---------------------------------------|----|
|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 1  |
| I. [실무서]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           |    |
|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 4  |
| I. 요율규제활동                             |    |
| II. 주요재무제표                            |    |
| III. 개념체계                             |    |
| Global 동향                             | 8  |
| I. 2017년 9월, 10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    |
| II. 2017년 9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    |
| IFRS 실무적용 해설                          | 17 |
| K-IFRS 1109 ‘금융상품’ – 경과규정             |    |

- ✓ 1단계 – 식별 : 주요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식별한다. IFRS의 요구사항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의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제정되므로 IFRS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식별한다.
- ✓ 2단계 – 평가 : 1단계에서 식별된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사실상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정보가 중요한지 아닌지의 평가는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 정보의 성격, 크기 또는 이 둘의 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 ✓ 3단계 – 조직화 : 주요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재무제표 초안에 정보를 정리한다.
- ✓ 4단계 – 검토 : 재무제표 초안을 검토하여 전체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모든 중요한 정보가 식별되고 중요성이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려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검토한다.

4단계의 중요성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 4단계 중요성 과정



## 특정 상황(과거 기간의 정보, 오류, 약정 및 중간재무보고)에 대해 어떻게 중요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지침

### ✓ 과거 기간의 정보

- 재무제표 작성이나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를 자동적으로 재생산하지 않는다. 대신, 주요 이용자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거 기간의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

### ✓ 오류

- 오류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누적적 오류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에는 그 기간의 재무제표가 발행 승인될 때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었거나,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후속기간에 해당 정보를 재검토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누적적 오류가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해지면 누적적 오류를 IAS 8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 ✓ 약정에 대한 정보

- 약정이 존재할 때, 기업은 약정 위반의 결과와 약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약정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약정위반의 결과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약정의 존재와 그 조건에 대한 정보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약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약정의 존재와 조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 ✓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중요성 판단

-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중간기간에 중요한지를 판단한다. 연차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라도 중간기간에 중요하지 않다면 중간재무보고에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 적용일

이 실무서는 2017년 9월 14일 이후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있다.



#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2017년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현재상황               | 진행계획              |        |
|--------------------|--------------------|-------------------|--------|
|                    |                    | 6개월 내             | 6개월 이후 |
| 기준서 등              |                    |                   |        |
| 개념체계               | 개념체계 작성 중          | 개념체계 발행           |        |
| 사업의 정의             | 기준서 작성 중           | 기준서 개정            |        |
| 공시개선<br>- 중요성의 정의  | 공개조안에 대한<br>의견수렴 중 | 기준서 개정            |        |
| 공개조안               |                    |                   |        |
| 요율규제활동             | 분석 중               | 토론서 또는<br>공개조안 발행 |        |
| 토론서                |                    |                   |        |
| 동일지배하의<br>사업결합     | 분석 중               |                   | 토론서 발행 |
| 동적 위험관리            | 분석 중               |                   | 토론서 발행 |
| 자본의 특성을 가진<br>금융상품 | 분석 중               | 토론서 발행            |        |
| 주요재무제표             | 분석 중               | 토론서 또는<br>공개조안 발행 |        |
| 영업권과 손상            | 분석 중               | 토론서 발행            |        |
| 할인율                | 분석 중               | 연구 결과 요약 발표       |        |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9, 10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요율규제활동

IASB는 규제약정에서 요율규제 매커니즘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제자산의 측정기준 선택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기업이 규제약정에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투입원가를 미래 기간의 요율에 반영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 즉 규제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할 수 있으며, 기업은 고객에게 화폐의 시간가치에 일정 수익률(return rate)을 더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자산 측정 시 다음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 기업이 발생한 원가에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포함된 이자요소를 별도로 표시,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 ✓ 규제이자율<sup>1</sup>과 시장이자율이 다른 경우, 규제자산의 현재가치 측정 시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기업이 발생한 원가에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 해당 손익을 일시에 인식할지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여부
- ✓ 화폐의 시간가치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투입원가를 단기간에 회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할지 여부

이번 회의에서 IASB는 상기 이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다음 회의에서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측정의 측면에서 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II. 주요재무제표

### 재무성과표의 구조 – 투자 범주와 추가적인 중간합계

IASB는 재무성과표에 경영진의 성과 측정과 관련한 중간합계보다 EBIT와 같이 기업간에 비교할 수 있는 중간합계를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향후 회의에서, IASB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IASB는 재무성과표에 투자범주를 도입하는 것을 연구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IASB는 투자범주와 EBIT 중간합계를 도입한다면,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재무성과표에 다음과 같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 자본구조와 관련된 수익
- ✓ 자본구조와 관련된 비용
- ✓ 순확정급여자산과 같은 기업의 자본구조의 일부가 아닌 부채가 자산과의 상계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인식되는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 기업의 자본구조가 아닌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

1 규제약정에서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기간에 걸쳐 원가 회수가 이연 되는 경우, 기업이 화폐의 시간가치의 차입원가,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이자율

### 기능별과 성격별 비용의 분석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 IAS 1.99<sup>2</sup>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용의 분석에 사용되는 성격별 비용 방법과 기능별 비용 방법을 설명함
- ✓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기업이 성격별 혹은 기능별 방법을 적용하여 비용의 분석 내용을 제공하도록 요구함
- ✓ 기능별 또는 성격별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요건을 개발함. 그 중 하나의 요건은 기업이 성격별 요소를 일관되고 임의가 아닌 기준으로 기능별 요소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용의 기능별 분석은 적정하지 않음
- ✓ 성격별 비용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기능별 비용 방법을 사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함
  - 재무성과표에 비용의 주요 분석을 표시함
  - 비용에 대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단일의 주석으로 공시함(즉, 기업이 기능별 비용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성격별 분석 내용)

## III. 개념체계

IASB는 측정의 불확실성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적용과 관련된 수정된 개념체계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IASB는 수정된 개념체계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충실했던 표현과 목적적합성 특히 측정의 불확실성과 목적적합성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IASB는 부채의 개념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개선사항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 부채의 정의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 기업은 의무를 가진다.
  -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시킨다.
  -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이다.

2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 ✓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거나 이전시켜야 할 경제적 효익 또는 특정 활동에 대한 이행을 받지 못한 경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받거나 특정 활동을 이행받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미이행계약)을 명확히 하였다.
- ✓ 현재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행된 활동3중 “단순히 존재하는 것(simply being in existence)”은 제외한다.



- 3 개념체계 개요초안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행된 활동은 특정 활동을 하는 것(Conducting particular activities), 특정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operating in a particular market) 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simply being in existence)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Global 동향

## I. 2017년 9월과 10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7년 9월과 10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IAS 8] 회계정책 변경(IAS 8 개정) – 제안된 threshold와 적용시기에 대한 이슈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 발표한 agenda decision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IASB는 다음의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이 해석위원회의 agenda decision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도록 IAS 8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 회계정책 변경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기대되는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

IASB는 이번 논의의 결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효익을 기업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 지침을 제공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2018년 1분기에 공개초안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 2. [IAS 19, IFRIC 14] IAS 19와 IFRIC 14의 개정

IASB는 지난 2015년 6월에 IAS 19 '종업원급여'와 IFRIC 14 'IAS 19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 요구 및 그 상호작용'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인 '제도개정, 축소, 정산 시 재측정 / 확정급여제도로부터의 환급가능성'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서 IAS 19에 대해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제도사건 : Plan events)이 발생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한 경우 후속기간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시 사용한 가정(수정된 가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IFRS Brief 2017년 5·6월호 참고)고 규정하였다.

또한, IFRIC 14에 대해서는 IFRIC 14 문단 12에서 언급하는 '기업이 무조건부 환급권'과 관련하여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로부터의 환급가능성을 결정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제삼자들의 힘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 ✓ 기업의 동의 없이 제삼자(예 : 제도 수탁자)들이 제도를 해산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제도의 점진적인 결제를 자산인식을 위한 정당한 이유로 가정하면 안 됨
- ✓ 기업이 미래 환급에 근거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초과적립액에는 제삼자들이 기업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예 : 종업원의 급여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면 안 됨
- ✓ 사외적립자산으로서 연금상품을 구매하거나 종업원들의 급여에 변동이 없는 투자 결정을 하는 제삼자들의 힘은 환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IFRIC 14의 개정에 대한 조사 결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ASB는 IFRIC 14의 개정으로 동일한 조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일관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IFRS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이 개정안의 효익이 개정안을 반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따라서 IASB는 IFRIC 14에 대해 보다 더 원칙 중심적 접근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IFRIC 14와 별도로 IAS 19의 개정사항만을 재공표 없이 마무리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IAS 19의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잠정적인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이다.

### 3. 사업의 정의

#### *FASB의 개정 사항과 IASB의 잠정 결론의 비교*

IASB는 2017년 10월에 IFRS 3 ‘사업결합’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정의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 선별검사(Screening Test)<sup>4</sup>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함
  - 기업이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나 요구하지는 않음
  - 선별검사 결과 자산 취득으로 식별된다면,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추가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선별검사 결과 자산 취득이 아니라고 식별된다면, 추가 평가를 수행해야 함. 만약 선별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추가 평가를 수행해야 함
- ✓ 선별검사에서 고려하는 종자산은 취득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아래 항목도 종자산에서 제외한다는 2017년 4월의 잠정적인 결정을 확인함
  - 이연법인세부채의 효과로부터 발생한 영업권
  - 이연법인세자산
- ✓ 2017년 4월과 7월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다른 사항<sup>5</sup>을 유지하기로 확인함

4 취득한 자산집단의 총 공정가치가 단일 또는 유사 자산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취득한 자산과 활동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제안(IFRS Brief 2017년 5·6월호 참고)

5 IFRS Brief 2017년 5·6월호 참고

## II. 2017년 9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7년 9월의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IFRS IC Current Agenda

2017년 9월의 해석위원회에서 진행중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관계기업 혹은 공동기업을 취득한 경우의 회계처리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회의에서 IAS 28은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이 지분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시에 해당 거래가 소유주로서의 자격이 행사된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유주와의 거래를 고려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9월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6월에 내린 결론을 변경하지 않았다.

IASB는 해석위원회의 상기 잠정적인 결론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 (2)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원가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회의에서 IAS 37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계약이행의 회피 불가능원가에 어떤 원가가 포함되는지 판단 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논의를 한바 있다.

- ✓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비용(제조간접원가 배분액을 포함)
- ✓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기업이 발생시키지 않았을 원가(흔히 증분원가로 불림)

해석위원회는 9월 회의에서 이 이슈와 관련하여 좁은 범위의 기준서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 2. IFRS IC Recommended Agenda to the IASB for Annual Improvement

2017년 9월 해석위원회에서 IASB에 연차개선의 일환으로 건의한 Agenda는 다음과 같다.

#### (1) [IAS 41]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사항: 세금

해석위원회는 공정가치 측정 시 세전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제외하고자 IAS 41 문단 22<sup>6</sup>에 언급된 “세금”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하였다.

6 IAS 41.22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IASB는 2011년 IFRS 13 ‘공정가치측정’ 기준서를 발행<sup>7</sup> 당시 IAS 41 문단 20에서 규정하던 생물자산 공정가치 측정 시 세전이자율을 사용하도록하는 규정은 삭제된 반면 IAS 41 문단 22는 삭제되지 않아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시 세전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석위원회는 향후 연차개선의 일환으로, 공정가치 측정 시 세전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IAS 41 문단 22에서 “세금”을 삭제하는 것을 IASB에 제안하였다.

### 3. IFRS IC Tentative Agenda decisions

2017년 9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Tentative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 (1)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부동산 계약에서 수익 인식

해석위원회는 주거용 단지(예 : 아파트 단지)의 각 호를 고객에게 매각하고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IFRS 15의 문단35의 적용(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여부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였다.

✓ 질의자가 제시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개발자인 회사는 주거용 단지를 건설하기 전에 각 아파트 단위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하에서 회사는 계약에서 특정하고 있는 완성된 부동산 단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과 계약상 동의된 부동산 단위를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 회사는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 단위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
- 고객은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구매가격의 일부분을 지급하며 건설이 완공된 이후에 나머지 구매 가격을 지급한다.
-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나,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재판매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다. (회사가 새로운 고객의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함)
- 만일 회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를 해임하고 다른 회사를 지정하여 주거용 단지의 건설을 완료할 권리가 있다.
- 해당 국가의 현행 법률 하에서 계약이 취소불가능 하지만 법원은 고객이 계약을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없는 특별한 상황(예를 들어 고객이 실직하거나 업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병에 걸린 경우)에서는 계약을 취소하는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판결한 바 있다.
-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고객은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일부 penalty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이 지급불능이라면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있다.

<sup>7</sup> IFRS 13 문단 B14(d)에서는 공정가치 측정 시, 할인율과 현금흐름의 가정이 일치한다면 세전/세후현금흐름과 세전/세후이자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해석위원회가 IFRS 15의 진행기준요건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FRS 15 문단35(1)의 적용

회사의 수행의무는 즉시 소비할 수 없는 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건설됨에 따라서 고객이 바로 각 부동산 단위 건설에 의해 제공되는 효익을 얻고 소비할 수 없다. 그러므로 IFRS 15 문단35(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IFRS 15 문단35(2)의 적용

- 고객이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계약적 권리를 재판매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미래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것이며 법적 소유권 없이 부동산 단위 자체를 매각할 수 없다.
- 고객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또는 부동산의 구조적인 디자인 등을 지시할 능력이 없으며, 부분적으로 완성된 부동산 단위를 사용할 수 없다.
-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이 건설회사를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통제의 지표가 아니다.
- 고객이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고객이 부동산으로부터 나머지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나, 이것이 부동산이 건설됨에 따라 부동산의 사용을 지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현황에 근거하여 고객이 부동산의 각 단위가 건설됨에 따라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IFRS 15 문단35(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IFRS 15 문단35(3)의 적용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특정된 부동산 단위를 완성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과 계약상 합의된 각 부동산 단위를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해석위원회는 계약상 제약이 실질적이며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단위는 회사에 대체 용도가 없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문단35(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가능한 권리의 평가는 권리의 존재와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회사가 그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나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은 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시된 현황에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을 보상할 수 없는 계약 취소 위약금에 대한 권리만이 있으므로 문단35(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없다.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현황에 근거하여 동 이슈는 IFRS 15 문단35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문단38에 따라 일정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은 부동산 단위를 매각하는 계약에 따른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또는 일정시점에 인식할지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2)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동일지배하 기업들이 유형자산의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 설립된 관계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의 회계처리

해석위원회는 동일지배하 기업들이 유형자산의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 설립된 관계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받았다.

### 사실관계

- ✓ 동일한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세 개의 기업(이하 “투자자들”)이 신규 기업을 설립함
- ✓ 투자자들은 각각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유형자산을 신설기업에 출자하고 신설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각 투자는 신설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
- ✓ 상기 거래는 시장 참여자들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짐

### 질의사항

- ✓ (Question A) 특정 기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일지배거래와 관련된 예외 또는 면제 규정을 일반화하여 상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
- ✓ (Question B)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지분과 무관한 지분까지만 유형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손익을 인식할 때, 다른 투자들의 지분에 대해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 ✓ (Question C) 투자자는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현물출자 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의 공정가치)

해석위원회는 관계기업에 대한 유형자산의 현물출자가 IAS 16 ‘유형자산’ 문단 25에 기술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 Question A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7에서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IFRS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IFRS를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각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동일지배거래를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기업은 동일지배거래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Question B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8은 기업과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unrelated investors’ interest)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문단 28은 기업이 관계기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하향거래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해석위원회는 IAS 28 문단 28의 ‘unrelated investors’라는 용어는 해당 기업 이외의 투자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즉, ‘unrelated’라는 용어는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의 특수관계자(related party)의 정의에서 사용하는 ‘related’라는 용어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의 관점에서 작성된다는 전제와 일관된 것으로, 사실관계에서 언급된 각각의 투자자는 보고기업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유형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관계기업의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은 투자자와 무관한 지분으로 보고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Question C

이 질의는 현물출자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유형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의 공정 가치가 다를 경우에만 관련이 있다. 해석위원회는 질의서에 기술한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현물출자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유형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의 공정가치가 일반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현물출자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유형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의 공정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지표가 있다면 투자자는 우선 차이의 원인을 평가하고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절차와 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해당 거래가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현물출자 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만약 해당 거래가 관계기업 투자의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면 투자자는 IAS 36 ‘자산손상’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절차와 가정을 재검토한 결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한 지분의 공정 가치보다 크다면, 이러한 사실은 투자자의 관계기업 지분이 손상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상기 질의 대상 기업이 상기 세가지 질문에 대해 회계처리 하는데 해당 기준서의 원칙과 규정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 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4. IFRS IC Agenda decisions

2017년 9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 (1)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종속기업의 최초채택

해석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계상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지배회사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IFRS1의 문단D16을 적용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으로 누적환산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IFRS1의 문단D16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이 ‘자산과 부채 측정’ 시에 적용하는 면제조항이다. 해석위원회는 종속기업이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누적환산차이는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므로 IFRS1의 문단D16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될 때 누적환산차이에 대해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IFRS1 문단D12-D13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문단은 종속기업이 전환일의 누적환산차이를 0이나 소급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석위원회는 최초채택기업이 누적환산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행 기준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종속기업이 지배회사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자본의 항목에 대한 가능한 좁은 범위의 기준제정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연구에 대해 추후 미팅에서 고려할 것이다.

## (2) [IFRS 9] 금융상품 - 공정가치의 변동을 OCI로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금융자산

해석위원회는 IFRS 9.4.1.4<sup>8</sup>에 따른 표시선택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해당 회계정책을 선택하면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의 보유자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질문자는 발행자가 IAS 32.16A~16D<sup>9</sup>를 적용하여 자본으로 발행한 금융상품에도 해당 표시 선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9.4.1.4의 표시선택은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분상품’은 IFRS 9에서 IAS 32.11에 의한 정의로 특정하고 있다. IAS 32는 지분상품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해석위원회는 IAS 32.16A~16D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는 충족하지만 예외적으로 발행자의 입장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32.16A~16D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IAS 32의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IFRS 9.4.1.4에 따른 표시선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IFRS 9.BC.5.21<sup>10</sup>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IFRS 9과 IAS 32의 요구사항에 근거하고 있다.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요구사항이 특정 금융상품의 보유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을 분류할 수 있는 적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8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 있음

9 IAS 32의 일반적인 자본의 정의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풋가능금융상품의 예외조항에 따라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하게 되는 금융상품

10 IFRS 9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IAS 32에서 정의한다.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3) [IAS 12] 법인세 –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

IFRS에서는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석위원회는 IFRIC 23 ‘법인세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제기된 의견에 비추어 이자와 법인세를 기준 제정 안건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지만, 개정의 효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하여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기업들이 법인세와 관련한 이자와 벌금을 회계처리 할 때, IAS 12 ‘법인세’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기업들은 이자와 벌금에 대한 수취채권이나 지급채무의 금액이 법인세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IAS 12를 적용하고, 만일 IAS 12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IAS 37을 적용한다. 그리고 IAS 1 문단 122에 따라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판단의 일부로 공시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12에서는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는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IAS 37에서는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이자와 벌금에 대한 회계처리 수행 시, IAS 12와 IAS 37 중에 무엇을 적용하는 지와 관계없이 기업은 이자와 벌금이 중요하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이전의 논의내용을 재확인 하였다.

### (4) [IAS 38] 무형자산 – 판촉활동을 위해 취득한 재화

제약회사가 판촉활동의 일부로 의사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재화(예 : 냉장고, 에어컨, 시계)를 취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기간 말 보유중인 재화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았다.

IAS 38 문단 5에서는 광고활동에 대한 지출은 IAS 38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 재화가 유일하게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라면, 기업은 IAS 38 문단 69, 69A에 따라 그 재화를 지급하는 시점과 무관하게 재화를 소유하는 시점(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의 요구사항은 제출자가 설명한 재화의 회계처리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 IFRS 실무적용해설

## 〈실무적용이슈 No.58〉

### K-IFRS 1109 '금융상품' – 경과규정

K-IFRS 1109호의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K-IFRS 1109는 소급 적용(위험회피계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계의 경과규정에 많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이번 실무적용해설에서는 K-IFRS 110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 I. 경과규정의 개요

|  |  |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
| 조기적용                                       | 허용   |
| 경과규정                                       |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br>(단, 위험회피계는 전진적용)   |
|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의<br>소급 적용의 예외사항 <sup>11</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모형 평가</li><li>✓ SPPI 요건에 대한 평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평가</li><li>- 중도상환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의 여부</li></ul></li><li>✓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li><li>✓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지정 또는 취소</li><li>✓ 유효이자율법의 적용</li><li>✓ 복합금융상품</li><li>✓ 원가로 측정한 비상장 지분증권/파생상품</li></ul> |
| 손상 요구사항의<br>소급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할 때<br/>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li></ul>   |
| 위험회피계 요구사항의<br>전진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li><li>✓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li><li>✓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br/>요구사항</li></ul>   |
| 비교표시 재무제표의<br>재작성                          | 비교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음<br>(위험회피계와 관련한 제한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가 있음)  |

11 ★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의 소급 적용의 예외사항은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의 측정 및 분류를 위하여 사실과 상황을 판단 할 때,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이 아니라 K-IFRS 1109의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

K-IFRS 1109의 경과규정에서는 “최초 적용일”이라는 중요한 용어가 사용된다. 최초 적용일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날이며 이 기준서의 발표 이후 보고기간의 개시일이어야 한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부터 K-IFRS 1109를 적용하는 회사의 최초 적용일은 2018년 1월 1일이 된다.

## II.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의 소급 적용의 예외사항

### 1. 사업모형의 평가

금융자산의 분류를 위해서는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인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인지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최초 적용일에 그때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그러한 평가의 결과에 따른 분류는 과거 보고기간의 사업모형에 상관 없이 소급하여 적용한다.

### 2. SPPI 요건에 대한 평가

#### 1)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평가

K-IFRS 1109에서는 금융자산의 이자율이 정기적으로 재설정되지만 재설정의 빈도가 이자율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 이자율이 1년 이자율로 매월 재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기준 현금흐름(이자율이 재설정되는 조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모두 해당 금융자산과 동일한 현금흐름)과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거나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변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계약상 현금흐름특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그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 2) 중도상환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의 여부

K-IFRS 1109에서는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액면금액을 할증하거나 할인한 금액을 매입/발행하고,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이자발생액을 나타내며 해당 금액에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수령/지급 하는 경우, 중도상환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하다면 상각후원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내재된 중도상환특성을 K-IFRS 1039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했는지의 여부를 최초 적용일에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고, 해당 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그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 3.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K-IFRS 1109하에서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이루어져있지 않아서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지분상품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분상품에 대한 분류를 결정할 때,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지만, 최초 적용일에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지분상품에의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4.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지정 또는 취소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부채)을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부채)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자산(부채)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나, 최초 적용일에 이러한 지정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정을 취소한다. 반면, 금융자산(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고, 최초 적용일에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 또는 취소는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며, 그 분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또한 own-use scope exception<sup>12</sup>의 경우에 해당 계약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인식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 해당 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던 계약에 대하여 비슷한 모든 계약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지정이 허용된다. 그러한 지정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은 최초 적용일에 기초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sup>12</sup>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는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음

## 5. 유효이자율법의 적용

유효이자율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예 : 금융상품을 상각후원가 측정 항목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과거기간을 재작성하는 경우에 각 비교 기간말의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로 본다.
-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의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해당 금융자산의 새로운 총 장부금액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새로운 상각후원가로 본다.

## 6. 복합금융상품

K-IFRS 1109에서 복합금융상품 전체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K-IFRS 1039에서는 복합금융상품의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교 표시하는 보고기간에는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측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기간을 재작성하는 경우에 복합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비교표시하는 보고기간에는 해당 복합계약의 공정가치가 측정되지 않았다면, 비교표시하는 보고기간의 복합계약의 공정가치는 매 비교 표시되는 보고기간 말의 각 구성요소(비파생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합이어야 한다. 상기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적용일에는 최초 적용일의 전체 복합계약의 공정가치와 복합계약 요소의 공정가치의 합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

## 7. 원가로 측정한 비상장 지분증권 / 파생상품

K-IFRS 1109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비상장 지분증권이나 이러한 지분증권과 연계된 파생상품이 과거에 K-IFRS 1039에 따라 원가로 측정된 경우에 이러한 금융상품은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종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보고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

## III. 손상 요구사항의 소급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

K-IFRS 1109에 따르면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판단하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최초 적용일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다만,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 IV.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전진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

IASB가 동적위험관리 회계처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는 K-IFRS 1039와 K-IFRS 1109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K-IFRS 1109를 적용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 K-IFRS 1039에 따라 위험회피 관계에서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다면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K-IFRS 1109 문단 6.5.15)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소급 적용은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기초에 존재했거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 ✓ K-IFRS 103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나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금융상품에서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구분하여 이를 제외했다면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한 회계처리(K-IFRS 1109문단 6.5.16)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소급 적용은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기초에 존재했거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하여 소급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이 가능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 즉, 이 경과규정을 위험회피관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다.
- ✓ 다음의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로 보지 않는 기준(문단 6.5.6)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 법규의 결과로 또는 법규의 도입으로,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교체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 된다.

#### V.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후판단을 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 할 수 있고, 최초 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항목에는 자발적으로 비교정보를 재작성을 하는 경우에도 K-IFRS 1109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류, 측정, 손상에 대한 정보를 재작성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분류, 측정, 손상의 모든 요소에 대해 재작성 해야 한다.

만일 기업이 비교정보를 재작성 하지 않는다면,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 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 사례 1. 비교 정보를 재작성 하는 경우



A사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K-IFRS 1109 채택하였다. 따라서 A사의 최초 적용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A사는 K-IFRS 1109의 경과규정에 대해 비교 정보를 재작성 하기로 하였다.

A사는 복합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K-IFRS 1039하에서 복합금융상품의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되어 공정가치로 측정되었다. K-IFRS 1107에 따라 이전의 매 보고기간말에 주계약의 공정가치가 공시되었다. A사는 K-IFRS 1109하에서 상기 복합금융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A사는 과거기간에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전체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다음은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이다.

| DATE                  | 내재파생상품의 FV | 주계약의 FV | 복합금융상품의 FV |
|-----------------------|------------|---------|------------|
| 2017.01.01            | 5          | 87      | N/A        |
| 2017.12.31/2018.01.01 | 9          | 90      | 96         |
| 2018.12.31            | N/A        | N/A     | 94         |

2017년 1월 1일의 주계약의 상각후원가는 88이다.

A사가 K-IFRS 1109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DATE       | 복합금융상품에 대해 인식한 금액 |    |
|------------|-------------------|----|
| 2017.01.01 | 5+87              | 92 |
| 2017.12.31 | 9+90              | 99 |
| 2018.12.31 |                   | 94 |

A사가 K-IFRS 1109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PERIOD                | 복합금융상품에 대해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2017.01.01~2017.12.31 | 2017년말 장부금액 - 2017년 초 장부금액 = 99-92  | 이익 7 |
| 2018.01.01~2018.12.31 | 2018년 말 공정가치 - 2018년 초 공정가치 = 94-96 | 손실 2 |

A사는 2017년 초와 2018년 초에 다음과 같이 경과조정(transition adjustment)으로 이익잉여금에 반영<sup>13</sup>하였다.

| DATE       | 복합금융상품에 대해 기초 이익잉여금에 인식한 금액                |    |
|------------|--|----|
| 2017.01.01 | 주계약의 공정가치 – 주계약의 상각후원가 = 87–88             | -1 |
| 2018.01.01 |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합 = 96–99 | -3 |

#### 사례 2. 비교 정보를 재작성 하지 않는 경우

B사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K-IFRS 1109 채택하였다. 따라서 B사의 최초 적용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B사는 K-IFRS 1109의 경과규정에 대해 비교 정보를 재작성 하지 않기로 하였다.

B사는 K-IFRS 1039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지만, K-IFRS 1109에 따라서는 당기 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각 보고기간 말의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DATE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2016.12.31 | 350  | 355  |
| 2017.12.31 | 368  | 370  |

B사는 전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없이 표시한다. B는 2018년 1월 1일에 기초 이익 잉여금에 2를 인식한다. 이는 2017년 12월 31일의 공정가치 370과 장부금액 368의 차이이다. 2018년 말의 재무상태표에 비교표시되는 2017년 말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금융 자산의 장부금액은 368이다.

만일, B가 재작성 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K-IFRS 1008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에 차이 금액이 인식된다. 즉 2016년 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인 5가 2017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인식된다. 또한 2016년 말의 공정가치와 2017년 말의 공정가치의 차이인 15는 2017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13 복합금융상품의 예외 : 과거기간을 재작성하는 경우에, 최초 적용일에는 최초 적용일의 전체 복합계약의 공정 가치와 복합계약 요소의 공정가치 합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보고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도록 함(6. 복합금융상품 참고)

#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 DPP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mailto:shyun@kr.kpmg.com)

**박은숙** 이사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mailto: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mailto:jinheehan@kr.kpmg.com)

**한상현** 이사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mailto:shan1@kr.kpmg.com)

**김용주** S.Manager  
T. (02)2112-3227  
E. [eungjookim@kr.kpmg.com](mailto:eungjookim@kr.kpmg.com)

**양유정** S.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mailto:youjeongyang@kr.kpmg.com)

**국민경** Manager  
T. (02)2112-6601  
E. [mkook1@kr.kpmg.com](mailto:mkook1@kr.kpmg.com)

[kpmg.com/kr](http://kpmg.com/kr)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